

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·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0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 관

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본 사업공고는 '27년 예산 확정 시 최종 지원 대상 확정(27.1월 예정)

사업명	지원내용	지원한도	지원조건
전통시장육성 (문화관광형)	○ (목적) 지역 문화·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- (내용) 지역특색과 연계한 투어코스, 관광콘텐츠,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지원	시장당 최대 20억원 (3년간)	▪ 국비: 50% ▪ 지방비: 50% (단,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)
시장경영지원	○ (목적)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생력 제고 - (내용) 역량강화(상인교육, 경영자문), 인력지원(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)	시장당 최대 45백만원 (1년간)	▪ 국비: 80% 이하 ▪ 지방비·자부담: 20% 이상 * 자부담은 지방정부 부담 가능
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	○ (목적)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별 위험요인에 맞는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 - (내용) 사회·자연재난 대비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	점포당 최대 5백만원 (1년간)	▪ 국비: 70% ▪ 지방비·자부담: 30% * 자부담은 지방정부 부담 가능

사업명	지원내용	지원한도	지원조건
지역상품 전시회 지원	○ (목적) 지역 전통시장·상점가 우수상품의 전시·홍보 지원을 통한 활성화 지원 - (내용) 온오프라인 전시회 기획·운영 직접비용 지원	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	▪ 국비: 50% 이하 ▪ 지방비·자부담: 50% 이상 * 자부담은 지방정부 부담 가능
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	○ (목적)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행사 운영에 적합한 인프라·지원역량을 갖춘 개최지 선정 - (내용) 정부포상수여식, 대규모 공연, 전시홍보, 먹거리 등 150개 부스 운영 등	국비 최대 5억원	▪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

사업별 세부지원계획

목 차

1. 전통시장육성(문화관광형)	1
2. 시장경영지원	11
3.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	18
4. 지역상품전시회 지원	28
5.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	33

1

사업개요

- ☐ **사업목적** : 지역 문화·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 및 장점 발굴, 결합하여 전통시장 집중 육성
- ☐ **지원대상**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
- ☐ **지원내용** : 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전담 ‘사업단’을 구성, 지역·문화·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
 - * (별첨1) 파일의 「참고1 전통시장 육성사업(문화관광형) 유형별 추진과제 가이드라인」 참고
 - **(문화거점형)** 문화예술 중심지 기능 수행 시장인 경우 공연·전시 등 문화예술, 플리마켓·야시장 등 문화행사 연계 지원
 - **(관광연계형)** 지역 관광자원 연계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시장인 경우 투어 운영, 시장 관광 브랜드화, 고객참여형 행사 등 지원
 - **(로컬커뮤니티형)** 생활 밀착형 커뮤니티 거점 시장인 경우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, 주말 마켓 정례화 등 지원
 - **(특산품연계형)** 고유 특산품을 보유한 시장인 경우 특산물 품평회, 온라인 판로 확대, 체험형 장터 등 운영 지원
- ☐ **지원규모** : 30곳 내외
 - * '27년 예산확정규모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및 지원 규모 등 변동 가능
- ☐ **지원예산** : 3년간 최대 20억원 이내(1년차 8억원, 2년차 6억원, 3년차 6억원)
 - * 국비 및 지방비 비율은 5:5이며, 재정자주도 50% 미만 기초지방정부는 10%p 차등 지원
 - ** 사업계획, 시장규모, 평가결과 및 연차별 성과점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
- ☐ **사업기간** : 최종 선정일로부터 '29. 12월까지

□ **자격요건** : 아래 기초역량을 충족하는 곳(접수 마감일 기준)

- ① 상인회 가입률 80% 이상
-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% 이상
- ③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% 이상
- ④ 화재공제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 50% 이상

*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가맹점 비율 산출 시 제외
[→ (별첨1) 파일의 붙임10 증빙必]

**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시스템(ogms.sbiz.or.kr)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함(가맹점 관리 시스템 로그인 → 가맹업무관리 → 가맹점정보관리 → 가맹점조회 → '디지털 여부' 가맹점 확인)

□ **제외대상** :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

- 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,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
- ②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중기부, 공단으로부터 '사업 참여제한'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
- ③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사업주체(상인조직)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, 국세·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
- ④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최근 1년내 협약 이후 전통시장 육성사업*(舊특성화시장 육성사업)을 중도 포기한 시장

* 디지털전통시장, 문화관광형시장, 백년시장

- ⑤ '27년 전통시장 육성사업(舊특성화시장 육성사업) 지원 중인 시장(계속사업 포함)
- ⑥ '15년~'26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
- ⑦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장
- ⑧ '27년 상권활성화사업,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(계속사업 포함)
- ⑨ **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(형)시장을 지원받은 경우**

*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

** 최종 선정 전, 제외요건 확인서류 제출 요청 예정

※ 시장경영지원(인력지원)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,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

□ 지원규모 : 선정 시장당 3년간 최대 20억원 지원

* 1년차 8억원, 2년차 6억원, 3년차 6억원

- 국비 50%, 지방비 50%를 기본으로,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%p 차등 지원
- 사업계획 및 시장 규모(점포 수*), 평가 결과 및 연차별 성과점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

* 사업자등록 점포 수 기준

□ 사업추진과제 가이드

○ 필수과업

*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과제 반영

- (야시장) ‘별별 야시장 in 2027’이라는 야시장 통합브랜드를 홍보하고, 시장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야시장 컨셉 수립 및 행사 운영
 - (문화 콘텐츠 개발) 지역의 문화·관광자원·축제 연계 등 시장 고유 콘텐츠와 지역 특색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
 - (동행축제) 행사 참여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및 행사 연계를 통한 고객 유입·매출 증대 프로그램 추진
 - (청년상인*) 경영·기술 진단·컨설팅,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육성, 노포 승계 지원을 통한 신-구 상인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
- * 「전통시장법 시행령」 제6조의2 청년상인의 기준(39세 이하)을 준용
단, 지방정부 조례에 별도 기준이 규정된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
- (바가지요금 근절) 상인 인식 개선 교육, 다국어 메뉴·가격 안내 시스템 구축(QR코드 연계) 등 가격 투명성 제고 추진

○ 세부 추진과제 예시

세부 추진과제	
관광요소 개발	특화상품(굿즈, 대표 먹거리 등) 개발 및 우수맛집 발굴
	다국어 메뉴판, 간판 등 외국인 쇼핑 여건 개선
	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
	지역 역사·문화·관광 자원 연계 체험 프로그램 및 투어 코스 개발
	시장 내 특화거리 및 포토존 조성
디지털 요소 도입	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(QR결제, 애플페이 등)
	온라인 쇼핑몰,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및 연계 판매
	공공 WI-FI 제공
복합 문화 공간 조성	야시장 및 야간 문화행사 운영(야간 경관, 야간 콘서트 등)
	역사관 조성(전통시장의 역사, 지역 설화, 역사적 인물 등 활용)
	로컬 아티스트 협업·지역 예술인 협업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
	동네서점 커뮤니티 라운지 운영(서점+카페+문화공간+주민커뮤니티 등)
민간 협력	기업 연계형 전통시장 상생 프로그램 운영
	동행축제 개최
	지역 대학·기관 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
마케팅·홍보	인플루언서 협업 및 숏폼 콘텐츠 등 바이럴 마케팅
	SNS 비주얼 임팩트 콘텐츠 제작
고객 신뢰	바가지 요금 근절 노력(교육, 다국어 QR코드 메뉴판 등)
	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확대
	친환경 포장재 전환, 다회용기 사용 등 ESG 실천 사업
안전·보안 강화	식품 위생 및 매장 청결 관리 강화(위생 교육, 캠페인 등)
	화재·안전사고 예방 관리(안전 교육, 캠페인 등)
	지식재산권 보호 강화(상표권 등록, 레시피 보호, 분쟁 대응 교육)
청년상인 육성	유희공간 및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노포 승계, 핵점포·로컬크리에이터 유치, 동네서점 창업 지원 등 청년상인 육성(상인 세대교체 및 업종 전환 등)

4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주체 : 지방정부

□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'26년 11월 16일(18시)까지 제출

* 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

** 신청기한 내 지방비 매칭 협약서 제출(미제출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)

□ 신청방법 :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* 세부 신청방법은 (별첨1) 파일의 「참고3 사업신청접수·승인 절차 매뉴얼」 참고

< 온라인 신청·접수절차 >

①기초지방정부 담당자(온라인 신청) → ②광역지방정부

담당자(검토→신청승인→공문발송*) → ③공단(접수)

* (별첨1) 파일의 「붙임6 접수시장리스트」 작성 후 공단 및 지방청으로 공문 발송 필요

1) (회원가입) 지방정부 담당자는 소상공인24에 공무원 인증 후 회원가입

* 단,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

2) (사업신청) 기초지방정부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-공고 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'공고명'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

-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·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

*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

**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

(단, 신청사이트 오류로,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)

3) (서류검토·승인) 광역지방정부 담당자는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및 승인

(1) 공고 기한 내 광역 지방정부는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 신청 내역 기준으로 접수 처리 필수

(2) 첨부파일은 '소상공인24'시스템을 통해 제출처리(단,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접수)

4) (공단 접수) 공단본부의 검토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(공단은 필요시 보완요청 가능)

□ 평가 내용

○ 기초평가 적/부, 현장(30), 서류/발표(70) 통해 최종 선정

< 평가절차별 주요 평가내용 >

구분	배점	내용
기초평가		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시장의 요건별 충족 여부 판단
현장평가	30%	중기부·공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반·편의시설 보유 수준, 상인회 협조도, 화재보험, 풍수해 보험 등 샘플링 조사 실시
서류·발표 평가	70% (서류30% 발표40%)	(서류) 사업의 이해, 비전/전략체계 적절성, 사업계획서 완성도 등 (발표) 시장 확장성, 성과관리의 적정성, 사업추진 의지, 의사소통 채널, 사후관리/지속가능성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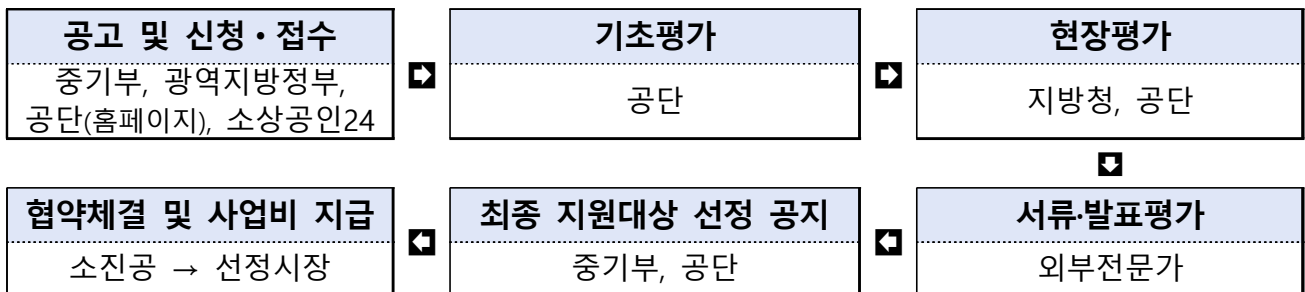
- 지역 문화·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키울 수 있는
전략과 사업 종료 후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중점 평가

○ 가·감점사항(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)

구분	세부내용	배점
가점	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0조에 의거, '25년, '26년 특별재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방정부에 소속된 곳(2점) -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, 빈 점포 제외)의 60% 이상인 곳(2점) - 화재공제(보험)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곳(2점) - 화재공제(보험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60% 이상인 전통시장 ①60%이상~70%미만(1점), ②70%이상~80%미만(2점), ③80%이상(3점) - 풍수해보험(6형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, 빈 점포 제외) 대비 30%이상인 곳(2점)	최대 10점
감점	-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 또는 이행계획 미수립(△3점) - 최근 3년('24년~접수마감일) 이내 '전통시장 육성사업' 지침위반 등으로 경고 이상 제재조치를 받은 시장(△10점) ① 보조금법 위반(△10점), ② 사업비환수(△8점), ③ 사업 제한 또는 취소(△6점), ④ 경고 또는 주의(△2점) - 최근 3년('24년~접수마감일)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 시장(△5점) * 단, 전통시장 육성·시장경영지원 중복선정에 따른 포기는 미감점 ** '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선정 시장 중, 협약 전 사업 포기는 미감점	최대 10점

*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

□ 향후절차(안) ※ 추진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추후 안내



* 공고문, 세부추진계획, 세부 단계별 평가지표 등 지방정부 대상 별도 사업설명회 예정(추후 별도 안내)

6

유의사항

◆ **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**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
 - 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 - ** 평가자료는 마지막 제출본으로 평가 진행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을 통해 사업 등록→교부→집행→정산→반납→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
-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(정부보조금)을 필히 제출,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협약 체결 후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
- ‘간접보조사업자’로서 ①e나라도움 필수사용(사업비 흐름 상시 모니터링), ②보조금관리법·국가계약법·청탁금지법 등 준수

- 동 사업 신청은 지방정부가 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-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(전자메일 등)하며, 미확인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,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상인회장 또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*
- * 단, 사고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참 시 공단과 협의 후 조정 가능(증빙 제출)
-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 동의하에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-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·표절이 확인된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(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)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동 사업의 수시·중간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·지방중기청·공단본부·공단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·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
- 사업관계자간 갈등으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공고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지방정부, 시장 등에 있음

7

문의처

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(042-363-7665, 7666, 7674)

☐ 지방중소벤처기업청

문의처	전화번호	문의처	전화번호
서울	02-2110-6343	울산	052-210-0045
부산	051-601-5138	강원	033-260-1624
대구·경북	053-659-2233	충북	043-230-5321
광주·전남	062-360-9154	충남	041-415-0638
경기	031-201-6944	전북	063-210-6431
인천	032-450-1140	경남	055-268-2581
대전·세종	042-865-6141		

※ 정부 조직 개편, 지방정부 통폐합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업관리 주체, 관할 구역 및 세부 기능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: 별첨1 파일 참조

구분	제출서류명	비고
필수	[붙임1] 전통시장 육성(문화관광형) 지원신청서	[붙임] 작성 후 첨부
	[붙임2] 사업계획서(문화관광형)	
	[붙임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	[붙임4] 지방비 확보 협약서	
	[붙임5] 상인현황 리스트	
	[붙임6] 접수시장리스트	
해당시	[붙임7]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	개별 증빙 후 첨부
	[붙임7-1]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	
	[붙임8]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	
	[붙임8-1] 풍수해보험 가입점포 현황	
	[붙임9]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	
	[붙임10]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	
참고	[참고1] 전통시장 육성(문화관광형) 유형별 추진과제 가이드라인	참고자료
	[참고2]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	
	[참고3] 소상공인24 사업신청접수·승인 절차 매뉴얼	

◆ 유의사항

- 1)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(26.10.20.)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(26.11.16.)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2) 사업운영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**게시된 양식을 사용**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
2

시장경영지원

1

사업개요

- ☐ **사업목적** : 상인회 자율적으로 상인교육, 매니저 등 지역·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 시장 자생력·경쟁력 강화
- ☐ **지원대상**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 - *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(시·도 지회 포함) 포함
- ☐ **지원내용** :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4개 부문(상인교육, 경영자문, 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)에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
 - * 단, 상인연합회(시·도지회 포함)는 '시장매니저' 부문만 지원가능
- ☐ **지원규모** : 400곳 내외
 - * '27년 예산확정규모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및 지원 규모 등 변동 가능
- ☐ **지원예산** : 선정 시장 당 최대 45백만원 이내
 - * 국비 및 지방비·자부담 비율은 8:2
 - ** 시장매니저(광역)의 국비 및 지방비·자부담 비율은 사업 운영세칙에 따름
- ☐ **사업기간** : '27.1월 ~ '27. 12월

2

지원자격

- ☐ **자격요건** : 아래 기초역량을 충족하는 곳(접수 마감일 기준)

① 화재공제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 50% 이상

□ 제외대상 :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

- 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,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
- ②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중기부, 공단으로부터 '사업 참여제한'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
- ③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사업주체(상인조직)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, 국세·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
- ④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최근 1년내 협약 이후, 시장경영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시장

*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

** 최종 선정 전, 제외요건 확인서류 제출 요청 예정

※ 전통시장 육성 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,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

3

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선정 시장당 1년간 최대 45백만원 지원

* 국비 및 지방비·자부담 비율은 8:2

** 시장매니저(광역)의 국비 및 지방비·자부담 비율은 사업 운영세칙에 따름

□ 지원내용

- (역량강화) 경영 핵심역량(가치) 중심의 교육 및 전문가 경영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하여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
 - (상인교육) 경영, 마케팅, 서비스, 제품개발, 세법, 회계, ICT, 우수 시장 견학,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
 - (경영자문) 일반 경영자문(경영전략, 법인설립, 특허·인증) 등
- (인력지원) 시장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고, 전통시장 내 공동 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편의 증진과 시장 서비스 기능을 강화
 - (시장매니저)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(회계·사무 등 행정업무,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, 상품권 관리업무 등) 수행
 - * 전국상인연합회 최대 3명(시장매니저(광역)), 시·도 지회 최대 2명(시장매니저(광역) 1명, 시장매니저 1명) 지원 가능
 - (배송매니저) 전통시장·상점가 내 공동 택배,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,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

4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주체 : 지방정부

□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'26년 11월 16일(18시)까지 제출

* 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

** 신청기한 내 지방비 매칭 협약서 제출(미제출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)

□ 신청방법 :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* 세부 신청방법은 (별첨2) 파일의 「참고2 사업신청접수·승인 절차 매뉴얼」 참고

** 상인연합회 및 시·도 지회는 공단으로 직접 이메일 제출(mkt@semas.or.kr)

< 온라인 신청·접수절차 >

① 기초지방정부 담당자(온라인 신청) → ② 광역지방정부

담당자(검토→신청승인→공문발송*) → ③ 공단(접수)

* (별첨2) 파일의 「붙임6 접수시장리스트」 작성 후 공단 및 지방청으로 공문 발송 필요

1) (회원가입) 지방정부 담당자는 소상공인24에 공무원 인증 후 회원가입

* 단,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

2) (사업신청) 기초지방정부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-공고 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'공고명'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

-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·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

*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

**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
(단, 신청사이트 오류로,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)

3) (서류검토·승인) 광역지방정부 담당자는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및 승인

(1) 공고 기한 내 광역 지방정부는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 신청 내역 기준으로 접수 처리 필수

(2) 첨부파일은 '소상공인24'시스템을 통해 제출처리(단,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접수)

4) (공단 접수) 공단본부의 검토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(공단은 필요시 보완요청 가능)

5

평가내용 및 향후절차

□ 평가 내용

- 정량평가, 정성평가, 가·감점지표 평가 통해 최종 선정

< 주요 평가내용 >

구분	배점	내용
정량평가	60점	시장선진화(온누리상품권 가맹률, 카드 가맹률 등), 상인조직화(시장 상인회 가입률, 상인회비 납부율 등) 수준을 평가
정성평가	40점	타당성, 효과성, 노력도 수준 등을 평가

- 가·감점사항(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)

구분	세부내용	배점
가점	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0조에 의거, '25년, '26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방정부에 소속된 곳(2점) - 화재공제(보험)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하는 곳(2점) - 화재공제(보험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60% 이상인 곳(2점) - 풍수해보험(6형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, 빈 점포 제외) 대비 30%이상인 곳(2점) -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(최대 5점) ① 20미만(1점), ② 20이상~40미만(2점), ③ 40이상~60미만(3점), ④ 60이상~80미만(4점), ⑤ 80이상(5점) *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가맹점 비율 산출 시 제외 [→ (별첨2) 파일의 붙임9 증빙必] **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시스템(ogms.sbiz.or.kr)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함(가맹점 관리 시스템 로그인 → 가맹업무관리 → 가맹점정보관리 → 가맹점조회 → '디지털 여부' 가맹점 확인)	최대 10점
감점	-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 또는 이행계획 미수립(△5점) - 최근 3년('24년~접수마감일) 이내 '시장경영지원사업' 지침위반 등으로 경고 이상 제재조치를 받은 곳(최대 △10점) ① 보조금법 위반(△10점), ② 사업비환수(△8점), ③ 사업 제한 또는 취소(△6점), ④ 경고 또는 주의(△2점) - 최근 3년('24년~접수마감일)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곳(△5점) * 단, 전통시장 육성·시장경영지원 중복선정에 따른 포기는 미감점 ** '26년 시장경영지원 선정 시장 중, 협약 전 사업 포기는 미감점	최대 10점

*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

□ 향후 절차(안) ※ 추진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추후 안내

공고 및 신청·접수	정량·정성 평가	최종 지원대상 선정 공지
중기부, 지방정부, 공단(홈페이지), 소상공인24	지방청, 공단, 지방정부, 외부전문가	중기부, 공단

◆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**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
 - 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 - ** 평가자료는 마지막 제출본으로 평가 진행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을 통해 사업 등록→교부→집행→정산→반납→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
-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(정부보조금)을 필히 제출,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협약 체결 후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
- '간접보조사업자'로서 ①e나라도움 필수사용(사업비 흐름 상시 모니터링), ②보조금관리법·국가계약법·청탁금지법 등 준수
- 동 사업 신청은 지방정부가 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-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(전자메일 등)하며, 미확인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,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
-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·표절이 확인된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(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)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의 수시·중간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·지방중기청·공단본부·공단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·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
- 사업관계자간 갈등으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 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공고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인력(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)의 무단 결근, 근무시간 미준수, 근무지 이탈 등 근태관리 부실이 확인된 경우, 사업 선정취소, 국비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지방정부, 시장 등에 있음

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인프라지원팀(042-363-7638, 7639, 7635)

☐ 지방중소벤처기업청

문의처	전화번호	문의처	전화번호
서울	02-2110-6343	울산	052-210-0045
부산	051-601-5138	강원	033-260-1624
대구·경북	053-659-2280	충북	043-230-5321
광주·전남	062-360-9154	충남	041-415-0638
경기	031-201-6944	전북	063-210-6439
인천	032-450-1140	경남	055-268-2581
대전·세종	042-865-6141		

※ 정부 조직 개편, 지방정부 통폐합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업관리 주체, 관할 구역 및 세부 기능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: 별첨2 파일 참조

구분	제출서류명	비고
필수	[붙임1] 시장경영지원사업 신청서	[붙임] 작성 후 첨부
	[붙임2] 사업운영계획서	
	[붙임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	[붙임4] 지방비 확보 협약서	
	[붙임5] 점포 명부 확인서	
	[붙임6] 접수시장리스트(광역지방정부 작성)	
해당시	[붙임7]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	개별 증빙 후 첨부
	[붙임7-1]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	
	[붙임8]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	
	[붙임8-1] 풍수해보험 가입점포 현황	
	[붙임9]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	
참고	[참고1]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	참고 자료
	[참고2] 소상공인24 사업신청접수·승인 절차 매뉴얼	

* 상인연합회 및 시·도 지회는 (별첨2)파일의 (필수)[붙임1]~[붙임3], (해당시)[붙임4] 제출

◆ 유의사항

- 1)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(26.10.20.)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(26.11.16.)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2) 사업운영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**게시된 양식을 사용**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
- ☐ **사업목적** : 화재·폭발 등 사회재난과 폭염·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별 위험요인에 맞는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
- ☐ **지원대상**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- ☐ **지원내용** : 사회·자연재난* 대비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
 - * (사회재난) 전기, 소방, 가스, 기타 / (자연재난) 폭염, 수해, 태풍, 폭설
 - (사회재난) 화재·폭발·인파사고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전기·소방·가스·기타분야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
 - (자연재난) 폭염·수해·태풍·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
- ☐ **지원규모** : 300곳 내외
 - * '27년 예산확정규모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및 지원 규모 등 변동 가능
- ☐ **지원예산** :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5백만원 지원
 - (매칭비율) 국비 70%, 지방비·자부담 30%(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)
 - (지원한도) 신청점포 수 ×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
- ☐ **사업기간** : 최종 선정일로부터 '27년 12월까지
- ☐ **추진체계**: 지방정부(시·도, 시·군·구)가 신청, 집행 등을 추진하고, 중기부·소진공에서 공고·접수·평가 등 추진

2

자격요건

- **지원대상** : 「전통시장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 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

- ① 영업점포의 30%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신청한 곳

※안내 사항

- 단, 중기부 '전통시장 안전점검' 결과 분야별 안전등급이 D,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안전등급 분야와 동일 분야 신청 시 **신청점포 수 조건 없이 개별점포 단위 신청 가능**
- 안전등급 확인 방법: (소방·가스 분야) '소상공인 24'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확인 가능
(전기분야)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중기부·소진공에서 직접 확인

- ②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%* 이상인 곳

* 개별점포 신청의 경우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 필수(접수 마감일 기준)

※지원 제외

- 접수 마감일 기준('26.11.16.)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,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
-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중기부, 소진공으로부터 '사업 참여제한'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
-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

- **지원조건** : 국비 70%, 지방비·자부담 30%(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)

- **(지원한도)** 시장별 총사업비는 신청점포 수 x 5백만원 이내로 산정
- **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**
 - **(공통)** 신청 점포 수 x 최대 50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편성
 - **(통합편성)** 공용구간, 개별점포 단위 구분 없이 시장 통합 개선 가능

※안내 사항

- 동일 점포가 복수 분야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점포 수는 1개 점포로 산정
- 신청점포 수 기준 산정액을 초과하는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및 선정·심의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, 사업비 적정성, 예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정 가능

※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부문 제한 없이 신청시장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

- (안전시설물 설치) 화재·폭발 등 사회재난과 폭염·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물 개선·설치 지원
- (사회재난분야) 화재·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·소방·가스·기타 안전시설 개선 지원
 - (자연재난분야) 폭염·수해·태풍·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개선 지원

지원유형		사업 내용
사회 재난	소방	▶ 화재알림시설(감지기, 수신기, 속보기 등), 소화기 등 소방 시설 개선
	전기	▶ 차단기, 분전반, 배선, 콘센트 등 전기 시설 개선
	가스	▶ 가스 보관함, 가스누출 경보기, 가스차단기 등 가스 시설 개선
	기타	▶ 스마트안전기술(AI 화재감시 CCTV, 지능형출동시스템, 원격전기점검 등)
자연 재난	폭염	▶ 쿨링포그, 이동식 냉풍기, 차양막, 차열시설 등 폭염 저감·온열질환 예방시설
	수해	▶ 차수판, 배수펌프, 배수로 정비, 누수 방지시설 등 침수·강우 피해 예방시설
	태풍	▶ 강풍 대비 고정장치 보강, 낙하비산 위험시설 정비, 외부 부착시설 안전조치 등
	폭설	▶ 제설함, 결빙 취약구간 개선시설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시설

* 지원품목은 예시이며, 명시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안전사고 예방 또는 재난피해 예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·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- (취약시장 개선) 중기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·E시장* 또는 개선이 필요한 시장은 우선 지원

* 지방정부 담당자가 '소상공인 24' 또는 중기부·소진공을 통해 확인 가능

-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 관련 분야 신청 시 현장평가를 면제하고, 서면평가·선정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

□ 지원내용 가이드라인

- 사업계획서는 단순 품목 나열이 아니라 시장의 위험요인, 개선 필요성, 설치 위치, 수해범위, 산출근거, 유지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

구분	작성기준
공통	▶ 신청분야별 위험요인, 현장사진, 점검결과, 피해이력, 수해점포, 설치 위치, 물량·단가·산출근거, 유지관리 주체를 구체적으로 작성 - 지원품목은 예시 품목에 한정하지 않으며, 안전사고 예방 또는 재난피해 예방 목적이 명확한 경우 신청 가능
전기	▶ 분전반·차단기·배선·콘센트 등 전기설비 노후도, 전기안전등급, 누전·과부하 위험, 설계·검수 자문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- 분전반, 차단기, 배선, 콘센트, 접지, 원격전기점검 등 전기안전 확보 효과가 있는 시설 중심으로 신청 가능
소방	▶ 화재감지·통보·초기진화·피난안전 확보 필요성, 기존 소방시설 설치현황,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- 화재알림시설, 감지·통보설비, 초기진화설비, 피난유도설비 등 화재대응 기능이 있는 시설 중심으로 신청 가능
가스	▶ 가스사용 점포 현황, 누출·폭발 위험요인, 노후배관·차단장치·보관함 개선 필요성, 전문업체 시공 및 사후관리 계획 작성 - 가스누출경보기, 가스자동차단기, 금속배관, 가스보관함, 안전밸브류 등 가스안전 확보 시설 중심으로 신청 가능
기타	▶ AI 화재감시 CCTV, 지능형출동시스템 등은 도입 필요성, 운영주체, 유관 기관 협조, 데이터 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작성 - AI 화재감시 CCTV, 지능형출동시스템, 안전표지, 추락·전도방지시설 등 현장 맞춤형 안전시설 신청 가능
폭염	▶ 온열질환 예방, 이용객 대기공간 보호, 고령상인 밀집구간 등 폭염 취약구간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 - 쿨링포그, 이동식 냉풍기, 차양막, 그늘막, 차열시설 등 폭염 저감 효과가 있는 시설 신청 가능
수해	▶ 집중호우, 침수, 누수, 배수불량 등 과거 피해이력과 취약구간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 - 차수판, 배수펌프, 배수로 정비, 집수정 보완, 우수관·흙통 보수, 역류 방지시설 등 피해예방 시설 신청 가능
태풍	▶ 강풍에 따른 낙하·비산, 외부 부착시설 파손, 고정불량 시설물 등 위험요인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 - 고정장치 보강, 낙하·비산 위험시설 정비, 외부 부착시설 안전조치, 강풍 취약시설 보강 등 신청 가능
폭설	▶ 폭설·결빙에 따른 낙상사고, 통행장애, 적설 취약시설 피해 예방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 - 제설함, 미끄럼방지시설, 경사로·출입구 낙상방지시설, 적설 취약시설 보강 등

- 편의시설(아케이드, 사무실, 화장실 등)의 교체는 불가

4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주체 : 지방정부

□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'26년 11월 16일(월) 18시까지 제출

* 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

□ 신청방법 :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* 세부 신청방법은 (별첨3) 파일의 「참고3 사업신청접수·승인 절차 매뉴얼」 참고

< 온라인 신청·접수절차 >

①기초지방정부 담당자(온라인 신청) → ②광역지방정부

담당자(검토→신청승인→공문발송*) → ③공단(접수)

* (별첨3) 파일의 「붙임6 접수시장리스트」 작성 후 공단으로 공문 발송 필요

1) (회원가입) 지방정부 담당자는 소상공인24에 공무원 인증 후 회원가입

* 단,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

2) (사업신청) 기초지방정부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-공고 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'공고명'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

-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·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

*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

**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

(단, 신청사이트 오류로,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)

3) (서류검토·승인) 광역지방정부 담당자는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및 승인

(1) 공고 기한 내 광역 지방정부는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 신청 내역 기준으로 접수 처리 필수

(2) 첨부파일은 '소상공인24'시스템을 통해 제출처리(단,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접수)

4) (공단 접수) 공단본부의 검토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(공단은 필요시 보완요청 가능)

- 평가개요 : 현장평가, 서면평가, 가·감점지표 평가 통해 최종 선정
< 평가절차별 주요 평가내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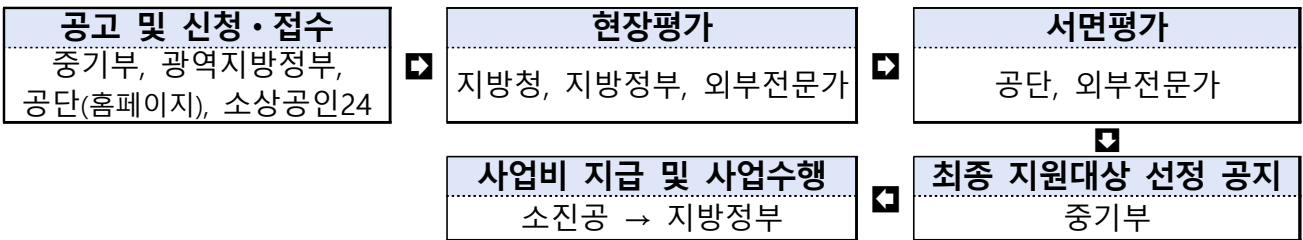
구분	배점	내용
현장평가	70점	시설 안정성, 사업 타당성, 사업 계획의 충실성 등
서면평가	30점	사업 필요성, 타당성, 추진 가능성, 유지계획 적정성, 사업효과
가·감점평가	최대 ±10점	(가점) 화재공제 가입률, 풍수해보험 가입률,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등 (감점) 안전 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하지 않은 곳 등

- (가·감점사항) 가점(최대 10점)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
미제출 시 추후 별도 보완절차 없이 불인정 처리(서류평가 시 적용)

구분	세부내용
가점	- 안전관리 우수시장·상점가 선정시장(10점) -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(3점) *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 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[증빙必] - 최근 3년('24년~'26년)간 노후전선 정비·화재알림시설 설치·안전관리패키지 지원이력이 없는 곳(5점)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방정부에 소속된 곳(2점) -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(중기부 화재안전점검 결과 소방·가스·전기등급 C등급 이하)(5점) -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 제외, 빈 점포 제외)의 60% 이상인 곳(2점) - 화재공제(보험)의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(2점) - 화재공제(보험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·빈 점포 제외) 대비 60% 이상인 곳(2점) - 풍수해보험(6형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 제외, 빈 점포 제외) 대비 30% 이상인 곳(해당 시장의 경우,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)(2점)
감점	-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(△10점) - '24년~'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곳(△5점) * 단,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'지방비 확보 불가' 사유로 포기한 경우 1년 - '24~'26년 법령 및 세칙 위반, 감사원, 공단 등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(△10점)

*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

□ 향후절차(안) ※ 추진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추후 안내



6

유의 사항

◆ **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**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□ 공통사항

-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업 중인 점포를 기준으로 하며, 노점과 빈 점포는 제외
-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점포는 신청 가능하나, 현장평가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상 제외
-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교부된 사업비, 발생이자 등은 관계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
- 신청점포 수는 동의서를 제출한 점포수를 기준으로 산정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지방정부, 시장 등에 있음

□ 지원품목 및 집행 유의사항

- 지원품목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장별 위험요인과 현장수요에 맞게 신청할 수 있으며, 평가·심의 과정에서 지원목적 부합 여부를 검토
- 공고문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도 안전사고 예방 또는 재난피해 예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
- 전기·소방·가스 등 법정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은 관련 법령·검사 기준에 적합 설치 의무

□ 화재알림시설 등 사후관리

- 감지기, 수신기, 속보기, 통신장비, 관제서버, 문자·앱·알림 등 주요 기능이 설치 후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업범위를 명확히 설정
- 관리자 계정, 장비정보, 알림 수신자 현황, 유지보수 연락처 등 운영자료는 사업 완료 시 상인회 및 지방정부에 인계하도록 명시
- 유지보수 업체 변경, 관리자 변경 등으로 화재알림 기능이 중단 되지 않도록 자료 인수인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포함

□ 전기분야 전문가 자문 의무화

- 전기분야 사업 추진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문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내 자문수당 포함 필수(사업 설계 및 검수 시 자문, 총 2회)

< 자문수당 책정기준 >

구분	사업 설계 시	시공 후 검수 시	
시장단위	시간당 11만원 (최대 33만원 이내)	점검점포 100개 미만	점포당 6.6만원
		점검점포 100~200개 미만	점포당 5.5만원
		점검점포 200개 이상	점포당 4.4만원
개별점포단위	점포당 7만원	점포당 7만원	

□ 공고문(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) 확인 경로
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→ 사업공고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 → 알림마당→공지사항
-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→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

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(042-363-7616, 7617, 7618)

☐ 지방중소벤처기업청

문의처	전화번호	문의처	전화번호
서울	02-2110-6317	울산	052-210-0045
부산	051-601-5138	강원	033-260-1624
대구·경북	053-659-2280	충북	043-230-5321
광주·전남	062-360-9154	충남	041-415-0639
경기	031-201-6933	전북	063-210-6431
인천	032-450-1140	경남	055-268-2581
대전·세종	042-865-6141		

※ 정부 조직 개편, 지방정부 통폐합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업관리 주체, 관할 구역 및 세부 기능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: 별첨3 파일 참조

* 신청서 등 양식에 따라 작성 후, PDF파일로 제출

1) 시장단위

구분	필수여부	서식	제출 서류
1	필수	붙임1	사업 신청서
2	필수	붙임2	사업 계획서
3	필수	붙임3	사업추진 동의서 * 신청점포 상인 자필 서명 필수(누락 시 미인정)
4	필수	붙임4	확약서
5	필수	붙임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
6	필수	붙임6	접수시장리스트(광역 지방정부 작성)
7	필수	-	전통시장 입증서류(전통시장 인정서, 대규모점포등록증 등)
8	필수	-	상인회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 등)
9	해당 시	붙임7-1	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
10	해당 시	붙임7-2	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* 유효기간, 증권번호 등 모두 기재하여 빈칸 없이 제출 필수
11	해당 시	붙임8	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(설치율 60% 이상일 경우만)
12	해당 시	붙임9	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
13	해당 시	-	화재공제(보험)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증빙
14	해당 시	-	화재공제(보험) 보험료 지방정부 지원 증빙
15	해당 시	-	개별점포 풍수해보험 가입증서
16	해당 시	-	자율안전관리활동 내역 증빙
17	해당 시	-	사업자등록증(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신청한 경우) *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하나 현장 평가 전 제출 필수(미제출 시 선정 제외)

2) 개별점포 단위

※ 안전점검 D,E인 개별점포의 경우 신청 가능

구분	필수여부	서식	제출 서류
1	필수	붙임10	사업 신청서
2	필수	붙임11	사업 계획서
3	필수	붙임12	사업추진 동의서 * 신청점포 상인 자필 서명 필수(누락 시 미인정)
4	필수	붙임13	확약서
5	필수	붙임1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
6	필수	-	전통시장 입증서류(전통시장 인정서, 대규모점포등록증 등)
7	필수	-	상인회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 등)
8	필수	-	사업자등록증
9	필수	-	화재공제/민간화재보험 증권

참고	1	[참고1] 지원품목 예시	참고자료
	2	[참고2] 지능형출동시스템	
	3	[참고3] 소상공인24 사업신청접수·승인 절차 매뉴얼	

4

지역상품전시회 지원

1

사업개요

- ☐ **사업목적** :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상품을 국민에게 발굴·소개하여 상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, 이미지 개선 도모
- ☐ **지원대상** :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·도별 지회
- ☐ **지원내용** : 온·오프라인 전시회 기획·운영 직접비용 지원
 - 전시기획·홍보비, 전시비용, 임대료, 부스설치비, 무대 및 장비 설치비, 인건비 등 직접비용
- ☐ **지원규모** : 10곳 내외
 - * '27년 예산확정규모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및 지원 규모 등 변동 가능
- ☐ **지원예산** : 선정 지회 당 국비 최대 40백만원* 지원
 - * 전체 사업비(국비 포함) 중 지방비·자부담 50% 이상 충족
- ☐ **사업기간** : '27. 1월 ~ '27. 12월

2

지원자격

- ☐ **지원대상** :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·도별 지회
- ☐ **제외대상** :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

- 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,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조직 중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조직
- ②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중기부, 공단으로부터 '사업 참여제한'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
- ③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사업주체(상인조직)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, 국세·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
- ④ 접수 마감일('26.11.16.) 기준 2026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지회

*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

** 최종 선정 전, 제외요건 확인서류 제출 요청 예정

3

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선정 지회 당 국비 최대 40백만원* 지원

- 전체 사업비(국비 포함) 중 지방비·자부담 50% 이상 충족

□ 지원내용

-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·관측 비용 지원
 - 전시기획·홍보비, 전시비용, 임대료, 부스설치비, 무대 및 장비 설치비, 인건비 등 직접비용

4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주체 : 광역지방정부

□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'26년 11월 16일(18시)까지 제출

* 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

** 신청기한 내 지방비 확보 약약서 제출(미 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)

□ 신청방법 : 신청기간 내 광역지방정부는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서류*를 공문 발송 필수

* 별첨4 파일의 [붙임1] ~ [붙임5] 문서

**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신청·접수 목록은 전자문서 기재 후 이메일 별도 송부
(expo@semas.or.kr)

< 사업 신청·접수절차 >

전국상인연합회 지회(계획수립) → 시·도(신청) → 공단본부(접수) →
중기부(선정) → 공단본부(선정결과 통보) → 전국상인연합회(운영)

□ 평가기준

- 정량평가(30점), 정성평가(70점), 가점(10점)으로 구성하여 평가
 - (정량평가) 개최예정지를 방문하여 전시규모의 적합성, 접근 편리성 안전 등을 평가하는 현장실태조사(30점)

<정량평가기준>

구분	시설	접근성	안전성	계
배점	10점	10점	10점	30점
평가 내용	전시규모의 적합성	관람객 접근 편리성	전시장 안전관리적정	

- (정성평가) 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전시회 기획 및 운영, 홍보, 관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(70점)
- *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산출

<정성평가기준>

구분	기획 및 운영	홍보	관리	계
배점	50점	10점	10점	70점
평가 내용	전시회 차별성 적절성, 구성 등	관람객 유치계획	사업비 집행의 효율성	

- (가점)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액 비율 1%당 0.5점(최대 5점), 지역 상품전시회 연합신청 지회(5점)

□ 선정방안

- 정량평가, 정성평가, 가점의 합산점수 결과를 제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
- 총점이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(기획 및 운영 부분)가 높은 지회를 선정

□ 향후절차(안) ※ 추진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추후 안내

선정평가위원회 지방청, 공단, 지방정부, 외부전문가 등	➡	심의조정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	➡	최종 지원대상 선정 공지 중소벤처기업부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◆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**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
 - 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 - ** 평가자료는 마지막 제출본으로 평가 진행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을 통해 사업 등록→교부→집행→정산→반납→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
- ‘간접보조사업자’로서 ①e나라도움 필수사용(사업비 흐름 상시 모니터링), ②보조금관리법·국가계약법·청탁금지법 등 준수
- 동 사업 신청은 지방정부가 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(전자메일 등)하며, 미확인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,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·표절이 확인된

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(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)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동 사업의 수시·중간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·지방중기청·공단본부·공단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·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
- 사업관계자간 갈등으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 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공고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지방정부, 지회 등에 있음

7 문의처

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인프라지원팀(042-363-7629, 7627)

※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: 별첨4 파일 참조

구분	제출서류명	비고
필수	[붙임1]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	[붙임] 작성 후 첨부
	[붙임2]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	
	[붙임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필수 (해당시)	[붙임4] 지방비 확보 협약서(광역지방정부)	
	[붙임5] 지방비 확보 협약서(기초지방정부)	

◆ 유의사항

- 1)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(26.10.20.)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(26.11.16.)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2) 사업운영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**게시된 양식을 사용**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
□ 기본방향

- 전시장·부대시설 등 행사진행 제반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, 개최지역 지방정부의 지원역량이 강한 곳을 우선 선정
- 전국 지방정부의 능동적 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개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추진

□ 박람회 개요(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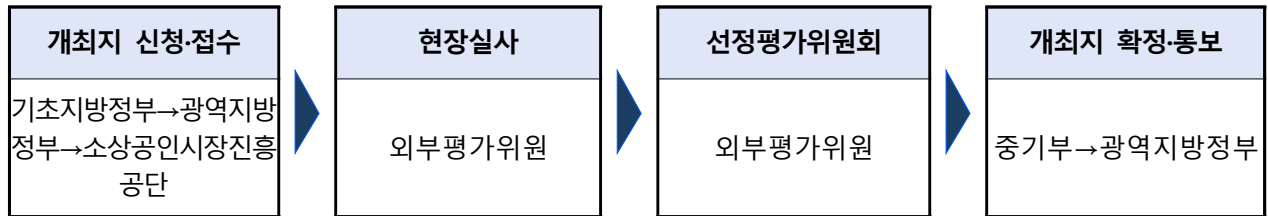
- (행사명) 2027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(제23회)
- (일 자) 2027. 9월 ~ 10월 중(3일간)
- (주최/주관) 중소벤처기업부/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전국상인연합회
* 후원(계획) : 행정안전부, 17개 시·도 등
- (참가대상 및 규모) 전통시장·상점가 등 130곳 내외
- (지원내용) 기본 부스 및 시설·집기류, 홍보 등
* 기본 제공사항 이외 개별·추가 설치물, 교통·숙박비는 자부담
- (사업예산) 지방비 300백만원 이상 필수 부담

□ 신청·선정 절차

- (신청대상) 행사개최 여건(전시장소, 숙소, 교통 등)을 갖춘 기초지방정부
- (신청기간) 공고일로부터 '26년 11월 16일(18시)까지 제출
* 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
** 신청기한 내 지방비 확보 약서 제출(미 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)
- (신청방법) 신청기간 내 지방정부는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서류*를 공문 발송 필수
* (별첨5) 파일의 [붙임1] ~ [붙임6] 문서
**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신청·접수 목록은 전자문서 기재 후 이메일 별도 송부
(expo@semas.or.kr)

○ 선정 절차

※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공문 신청·접수



※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① (개최지 현장실사) 외부 전문가로 실사단 구성

- 실사기간: '26. 11월 ~ 12월 중
- 평가위원: 마케팅, 전시, 시설, 전통시장 분야 등 관련 외부전문가로
구성하여 공정성·객관성 유지
- 주요내용: 행사 장소 확인, 전시장 관계자 면담 등
- * 전시 장소, 먹거리 조리 장소, 컨벤션 홀, VIP 대기실 2개, 주최자 사무실 등

② (개최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) 외부 전문가로 위원 구성

- 평가기간: '26. 11월 ~ 12월 중
- 평가방법: 기제출된 유치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
- * 지방정부별 PT실시(발표 : 지방정부 담당자, 발표 20분, 질의응답 20분)

< 주요 평가사항 >

- ◇ 행사장소의 적합성, 시기 적절성(지역행사 연계 등), 전시장 규모, 교통 및 접근성, 주변 인구, 숙박 등 주변 시설 이용 편의성, 안전시설 등을 고려
- ◇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방정부 및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지방정부의 지원 역량(홍보·인력·안전관리 지원 등)을 비중 있게 반영
 - ▶ (추진계획) 추진체계의 적절성, 투입인력, 예산지원, 대규모 지역행사와 연계 등
 - ▶ (홍보·광고)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(지역언론, 공공게시판, 지방정부 자체 전광판)
 - ▶ (지역 내 참가시장 지원) 지역 내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역행사
 - ▶ (참관객 모객방안) 참관객 단체관람 방안(지역행사 연계) 및 차량지원 등
 - ▶ (기타 지원계획) 주차공간, 교통, 숙박, 의료, 안전 및 자원봉사자 지원 계획 등
- ◇ 개최지 최소요건 : 실내·외 행사장 면적(10,000㎡), 주차가능대수 500대 이상 등
원활한 행사 운영이 가능한 곳

※ 단, 1개 지역 신청 시 개최 적격 여부 심사 후 부적격 시 재공모 추진

③ (개최지 확정·통보) 중소벤처기업부

- 확정시기: '27. 1월 중(예정)

- 선정기준: 현장실사 30점(정량), 유치계획서 70점(정성)을 합산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지방정부에 통보

□ 문의처

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인프라지원팀(042-363-7629, 7627)

※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: 별첨5 파일 참조

구분	제출서류명	비고
필수	[붙임1]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원신청서	[붙임] 작성 후 첨부
	[붙임2] 지방정부 지원계획서	
	[붙임3] 행사 장소 및 부대시설 현황	
	[붙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필수 (해당시)	[붙임5] 지방비 확보 협약서(광역지방정부)	
	[붙임6] 지방비 확보 협약서(기초지방정부)	

◆ 유의사항

- 1)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(26.10.20.)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(26.11.16.)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2) 사업운영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**게시된 양식을 사용**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